

# 1. 住宅分讓價 原價連動制上の 宅地費 算定方式 調整

資料提供：建設部

## ○ 공공개발택지의 선납대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기간을 조정 (92. 1. 1 시행)

- 현재 공공개발택지의 대금은 계약금 30%, 중도금 40% 등 70%를 선납하고 잔금 30%를 택지인도시 선납하며, 선납된 택지비에 대하여는 11.5%의 법정이자율 인정하여 주고 있음.
- 그러나 택지비의 회수는 주택을 분양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는 6개월 정도가 경과되어야만 가능함에도 현재는 택지인도일까지의 이자율만 인정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음.
- 공공개발택지의 선납대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기간을 택지비의 실제회수가 가능한 택지인도일로부터 중도금을 받는 최소한의 기간(6개월)까지 인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※ 단, 증빙할 수 있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는 추가 인정가능